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05 / May. 2017

05

기획 특집

청년 일자리 찾기, 이렇게 지원합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재정 논단

신정부 재정정책의 과제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재정이슈포커스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한 국고보조사업 효율화 방안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예산성과 우수사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으로 재정 수입 증대 기여
김희정 국토교통부 행정주사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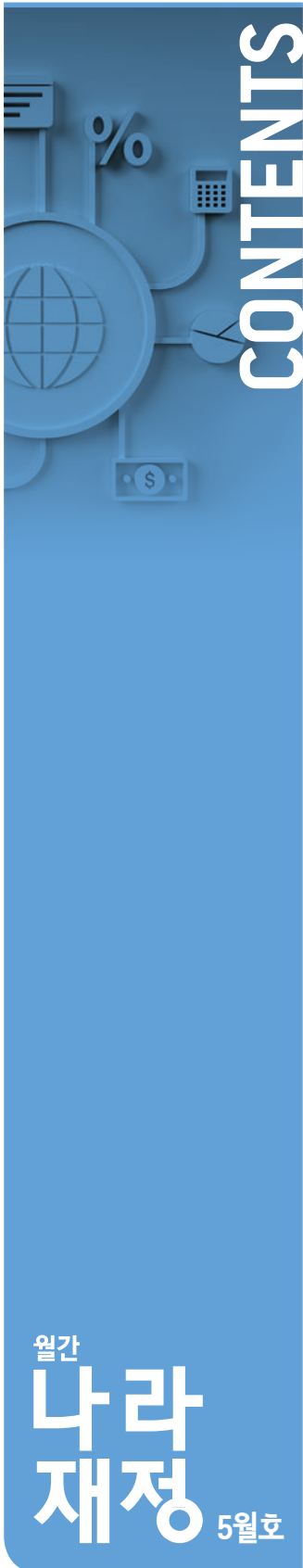
시작: START



Global Finance Platform Builder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Vol.05 / May. 2017

권두언 04

김태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기획 특집 10

청년 일자리 찾기, 이렇게 지원합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재정 논단 20

신정부 재정정책의 과제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재정이슈포커스 30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한

국고보조사업 효율화 방안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예산성과 우수사례 38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으로 재정 수입 증대 기여

김희정 국토교통부 행정주사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44

국외 재정동향 56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64



김태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한국경제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양극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15년부터 2%대로 진입해, 올해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는 올해 1월에 발간한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저성장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에 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쉽게 예단하기 힘든 것도 바로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일자리 부족 문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p 상승한 11.2%로 관련 통계 자료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4월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였던 1999~2000년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의 실업률 수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지난 3월에 0.1%p 하락했던 전체 실업률도 4월에는 4.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습니다. 일자리 부족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통계지표가 있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보다 0.26%p 상승하여 4.48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고용한파가

주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저성장, 일자리 부족, 양극화 문제는 모두 연결되어있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일자리는 부족하고,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 고리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과거 정부에서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투자 유도, 규제 완화, 정책금리 등의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4년간 3번의 추경까지 했지만,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는 데 실패했습니다. 재정 투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유일한 전략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며, 내수 확대가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세계은행, IMF, OECD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유합니다. 또 국내에서는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총재도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일자리에 투자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산업연관표 상 고용표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을 투자했을 때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이러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면 일자리는 늘어나고, 소득은 확대되고 내수를 진작시켜 결국 세수도 확대될 것입니다.

재정 투자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 관리 체계가 더욱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쉽게 국가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무슨 용도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인건

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통계는 국가직은 기획재정부, 지방직은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의 경우 국가직 교육공무원과 지방직 행정공무원, 국가공무원이 섞여 있어, 발표되는 자료마다 공무원 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군인 등의 특수 직종 등은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통합적 정보 관리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유용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통계는 그나마 덜 복잡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를 알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단지 정부 예산이 얼마 들어간 사업이라고 기억할 뿐이고, 광역, 기초단체의 지방예산까지 통틀어서 재정투입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국가채무, 정부부채의 내역은 자세히 알기도 힘듭니다. 효율적인 재정정보 관리와 공개가 필요합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위해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역할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그에 걸맞는 재정정보원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태 년

MONTHLY

기획 특집 SPECIAL

기획 특집은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10 / 청년 일자리 찾기, 이렇게 지원합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ks5015@korea.kr

SPECIAL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ks5015@korea.kr

청년실업 완화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청년 일자리 찾기, 이렇게 지원합니다

1. 청년 고용 현주소

희망과 도전의 상징이었던 청년이 언제부터인가 위로와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N포세대”나 “청년실신”이니 하는 가슴 아픈 신조어들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의 고용창출 여력도 약화되는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취업관련 정보의 확산, 취업지원, 직업교육 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구직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관련 정책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구직 단념자가 100만 명을 넘는 등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제 구조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 약화, 경력직에 대한 기업의 선호로 신규 인력 수요가 줄어든 반면,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가 구직 활동기에 진입하며 청년들의 구직 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까지 30%대에 머물렀던 대학진학률이 2016년에는 69.8%까지 상승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고학력 청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구직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공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 현

실을 타개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청년들을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현상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 지도,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의 조기입직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들이 국내 일자리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2. 능력중심 기반의 노동시장 이행 촉진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문제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고 교육과 산업 현장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치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 일터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시행 중이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능력 중심 기반의
일자리 지원 시행

2-1.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는 취업 이후 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고, 훈련 성과를 평가해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입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제도다. 일주일에 3~4일은 기업에서, 1~2일은 학교에서 실무를 배우는 독일의 듀얼시스템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도제식 훈련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일학습병행제는 크게 졸업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도제훈련을 실시하는 재직자 단계와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 재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재학생 단계로 구분된다. 초기 일학습병행제는 재직자 위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4년 11월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특성화고 단계)를 시작으로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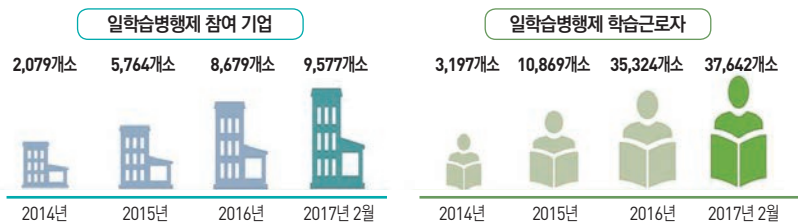
〈표 1〉 일학습병행제 구성

	대상 및 유형	명 칭	주요 내용
재 학 생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 + 도제훈련 → 현장성 제고
	〈전문대 단계〉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Uni-Tech)	전문대 중심으로 고교과정을 통합하여 기간 단축 및 조기 입직 유도
	〈대학교 단계〉 4년제 대학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제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월) 방식 장기 현장 실습 + 일학습병행제 참여
재 직 자	단독기업형		명장 기업, 우수기술 기업 등 개별 기업에서 현장 훈련과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 실시
	듀얼공동훈련센터형		대기업대학산업별 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 외 훈련 실시지원

한국 현실에 맞는
일학습병행제 시행으로
청년실업률 완화 기대

일학습병행제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양적·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4년 2,079개 기업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말 기준 9,57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35,324명의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하였다. 일학습병행제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정착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층의 실업 문제 해결을 해결하며,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특히, 제도를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대학이나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능력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청년 일자리 확대와 함께 입직 기간 단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문제 해소 등으로 청년실업률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산업 현장과 학교교육의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기업·사업주단체·민간 우수 훈련기관 등 운영기관 주도로 대학과 협력하

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금융·기계·IT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 분야 교육과정을 비전공자의 눈높이에 맞춰 멘토링과 현장 실습을 접목 운영함으로써, 취업과 동시에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참여 학생에게는 학점 인정, 상담 및 경력관리를 통해 단계별로 진로를 설계하고, 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 기관의 협약 기업 등으로 취업을 연계한다.

특히, 인문·사회·예체능 등 취업 취약 전공 청년에게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재학 단계부터 전공 외 분야에 대한 융합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조기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취업 의지와 목표에 따라 노동시장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휴학·졸업 유예 후 사교육시장으로의 쏠림과 사교육비용을 줄여, 산업 현장과의 미스매치문제 완화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과과정의 개편을 유도함으로써 청년 고용 창출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3.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근속 지원

청년들의 구직난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청년들에게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소개하고, 취업과 근속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청년친화 강소기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노동부는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2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1,118개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양질의 청년 친화적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하여는 병역특례업체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청년인턴 등 청년 대상 사업의 우선 선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취업포털사이트와 일자리정보 DB가 연계되고,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가 해당 강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CEO가 바라는 인재상 등 생생한 현장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8대 민간취업포털과의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 연

산업현장과 학교교육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실업아카데미
사업으로 고용창출 유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계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강소기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하여 2년 만기 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여 만 기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에 연장 가입(3~5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서의 장기 근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내일채움공제’에 5년 재가입할 경우 7년간 3,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2016년(7월~12월)에는 1만명(청년인턴제)을 목표로 시범추진 한 결과 2017년 3월까지 총 9개월 동안 7,505개 기업에서 총 13,838명의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2016년에는 6개월간 3,375개 기업에서 6,678명의 청년이, 사업이 본격 시행된 2017년에는 3개월간 4,130개 기업에서 7,160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그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참여 경로를 다양화하고 사업 규모도 5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청년들이 정부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에 2년 동안 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청년들이 갈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4. 청년 눈높이에 맞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년들이 각종 취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수단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대학

을 중심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청년 워크넷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4-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원하는 시간에 한곳에서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진로 상담과 지도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진로 탐색-진로 설정-역량 함양-취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저학년부터 졸업까지 재학 단계별 체계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 및 지역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손쉽게 정부 청년고용정책을 접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마련되었다.

2016년 11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진로·취업 지원 관련 인프라, 교양필수 교과목 운영 현황, 서비스 이용률, 직무 능력 중심 프로그램 운영 등 대부분의 조사영역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이 일반 대학에 비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특화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특히,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대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고용센터 및 청년희망 커피트럭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정책인지도가 2015년 27.9%에서 2016년도 48.3%로 크게 향상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정보제
공 및 단계별
고용서비스 지원**

4-2. 청년 워크넷

우리나라의 발전된 ICT를 활용해 청년들이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청년 워크넷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을 마련하여 일자리 정보, 강소기업 정보,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일 평균 14,514명의 청년이 청년 워크넷을 방문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개시한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7가지 유형¹⁾으로 구분하여 지원 규모, 혜택, 지원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청년

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사업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현재 108개 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정책참여단’²⁾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워크넷에 업로드되어 있는 취업지원사업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청년친화적 안내문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콘텐츠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학생 직무 체험 등 고용노동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힘든 청년들에게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엄선된 청년친화 강소기업 1,118개에 대하여 업종, 근로자 수, 재무정보, 매출액, 신입사원 임금, 스토리텔링식 현장 탐방기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워크넷에 108개의
취업지원사업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속적
관심 및 방문 유도



5.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

정부는 지난 20년간 각 부처 주도로 해외 취업, 인턴, 봉사 등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해외 진출 사업 내실화를 위해 연수취업을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 중심으로 개편하고, 해외 취업, 인턴, 봉사, 창업을 「K-Move」로 브랜드화하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해외 진출 필요 역량 및 준비사항 등의 상담, 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K-Move 멘토

- 1) 취업진로상담, 교육·훈련, 체험·인턴, 해외 취업, 공공일자리, 지원금·보조금, 창업
- 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산하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 내에 설치되어 청년고용정책 당사자인 청년관점에서 청년사업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3)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는 해외 취업, 인턴, 봉사, 창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해외 진출 통합정보 사이트로 해외일자리 찾기, K-Move스쿨 등 주요 프로그램 참여 신청, 국가별 생활·비자정보 찾기 등이 가능하다.

링을 통해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월드잡플러스³⁾, 블로그, SNS 등 온라인 멘토링 외에 연세대 등 12개 대학을 직접 방문, 해외 취업 성공 전략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멘토링’ 등 오프라인 활동 다각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에 멘토 241명, 멘티 1,226명을 선정하는 등 서비스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 근속을 위해 청년층(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8분위 이하 등 대상)에게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정착 비용의 일부를 해외 취업성공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여, 청년의 신흥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 인턴, 봉사, 창업 등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자리의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월드잡플러스’를 개편 보완하여 해외 진출에 관한 각종 공고, 해외 취업 알선, 대륙별·국가별 커뮤니티, 국가별 정보, 비자 및 해외 유망 직종 등 청년들이 더욱 수준 높은 해외 진출 정보 및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가별 해외 진출 길잡이로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UAE 등 5개국 ‘해외 취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월드잡플러스)에 게재하였다.

**해외 취업 청년들에게
정착 비용의 일부를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으로 지원하여
해외 진출 유도**

6. 맺음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매우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적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진단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 등 인력수요자는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정부는 관련 정보를 꾸준히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새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MONTHLY

재정 논단 OPINION

재정 논단은 정보와 정책 진단 및 제언 등
재정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재정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 / 신정부 재정정책의 과제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fa20@hanmail.net

OPINION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fa20@hanmail.net

한국경제가 저성장
침체에 빠진 직접적
이유는 총수요 부족
지속 때문

신정부 재정정책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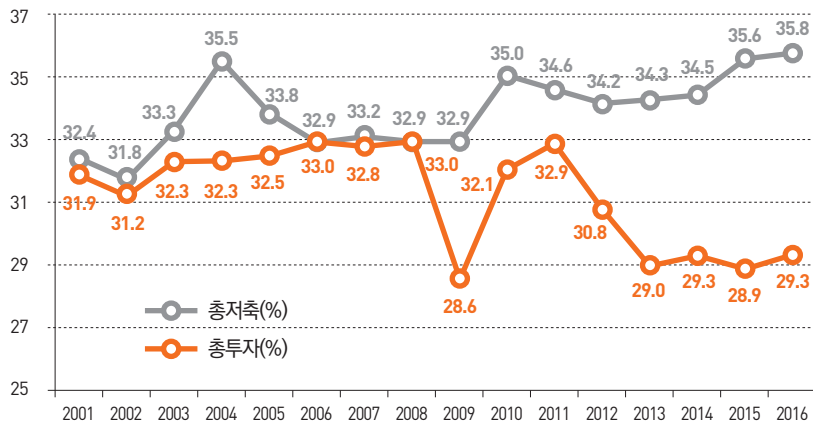
신정부 재정정책의 과제는 단기 재정정책 과제와 중장기적 재정정책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신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우선 과제는 청년실업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문제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대응적 단기 재정정책 과제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신정부 1, 2년차 재정운용의 방향을 경기 대응 측면에서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둔화 등 한국재정에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한 재정정책 대응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이 글은 신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단기 및 중장기 재정정책 과제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총수요 부족의 한국경제

한국경제가 저성장 침체에 빠진 직접적 이유는 총수요 부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GDP 대비 국내총투자율은 2011년 32.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29.3%로 떨어졌는데, 이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27.9%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소비 비율은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인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어 2015년 47%, 2016년 46.4%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8.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내 총수요 부족의 크기는 GDP 대비 총저축률과 GDP 대비 국내총투자율의 격차(gap)로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총저축률은 35.8%인데 반해 국내총투자율은 29.3%이다. 총저축과 총투자의 격차는 [그림 1]에서 보듯이 2012년부터 급격히 확대되어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여파를 받았던 2009년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다.

그림 1. GDP 대비 총저축률과 총투자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최근 세계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는 기본적으로 수입 증가 둔화에 기초한 불황형 흑자였다. 그러므로 경상수지 흑자가 총저축과 총투자의 격차를 메우고 있지만, 가계소득 증가세가 정체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침체에 빠져 있고, 일부 수출산업을 제외하면 기업의 투자율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없다면 한국경제의 총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 침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

**경제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실업**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성

신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수출 증가로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어 경제 상황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경제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실업 상황이다.

실업률은 2013년 3.1%, 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 2017년 1/4분기 4.3%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1년 7.5%에서 계속 올라가 2016년에는 9.8%, 2017년 1/4분기에는 10.8%에 달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2012년 37.5%에서 2016년 39.3%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고령자의 취업 증가는 노인 빈곤 문제를 반영하는 것

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 상황은 공식 실업률 지표보다 더 심각하며, 지금의 실업 수준은 2013년과 2016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경의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종 수요 항목별 취업·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취업유발계수의 경우 민간 소비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정부 소비, 정부 투자, 민간 투자의 순이다. 고용유발효과는 정부 소비, 정부 투자, 민간 투자, 민간 소비의 순이다. 어느 경우든 수출의 취업·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낮다.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이 필요한데, 수출보다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같은 내수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것이다.

〈표 1〉 재정수지의 적용(시기별)

(단위 : 명)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민간 투자	정부 투자	수출
취업유발계수 ¹⁾	15.2	15.0	13.1	13.6	8.1
고용유발계수	9.6	12.8	9.9	10.1	5.9

※ 주 : 취업·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 원으로 유발된 취업자 및 고용자 수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불황이 지속되면 경제의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

[표 1]에서 보듯이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는 5.9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수출 증가를 주도하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작은 업종이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작다.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로 추계하면 10조 원 추경 효과는 정부 소비에 지출하는 경우 15만 명, 정부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13만 6,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데, 신정부가 계획하는 추경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이다.²⁾

불황이 지속되면 경제의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될 수 있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저성장 침체가 지속되면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가 거시경제 전반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한 국가의 공급 능력을 말하는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자본축적과 총요소생산성으로 불리는 기술 혁신 능력으로 결정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실업자의 노동 능력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 위축으로 자본 축적이 둔화되고, 모험적인 혁신 노력들의 성공 확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국 연



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이 이런 논리에 동의하고 있다.³⁾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질금리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한다. 그는 1990년대 일본의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더 이상 총수요를 자극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만일 일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불황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⁴⁾ 당시 일본의 재정정책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주민이 얼마 살지 않는 섬에 연육교

**인플레이션율과
실질금리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역
할이 중요**

1) 취업유발계수는 특정산업에서 10억 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고용유발계수 또한 특정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수를 말한다.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의 차이는 취업계수는 상용, 임시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용계수는 상용, 임시직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2) 2014년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는 전 산업 8.7명인데 반해 복지 및 사회서비스는 16.7명이다.

3) 이력효과란 노동경제학에서 실업자가 장기간 실직을 하면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었던 숙련 기능과 인적자본의 상실, 건강 악화로 노동능력이 떨어져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은 총수요와 총공급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고, 잠재성장률은 공급 측면에서 결정된다면서 케인스주의의 총수요 확대 정책이 일시적 경기 부양 효과만 있을 뿐 잠재성장률을 올리지 못한다고 폄하했다. 그러나 열린 미국 FRB 의장은 총수요 확대 정책을 쓰지 않고 저성장 침체를 방지하면 결국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나중에는 총수요 확대 정책을 실시해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총수요와 총공급은 전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분적(dichotomic)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P. Krugman, "Is Fiscal Policy Poised for a Comeback?".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1(4), 2005.

를 건설하는 등 과거의 관성대로 주로 토건분야에 비효율적으로 재정 투입을 한 데 있었지, 재정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정부도 거시경제의 이력효과를 고려하면서 경기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

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032년부터 인구 감소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 재정 수입의 자연 증가는 점점 둔화되는 반면, 현재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고령화에 의해 복지 지출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근본 이유가 저출산·고령화 때문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재정건전성 위주의 정책을 편다고 해서 장기 재정건전성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실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24.8세, 2000년 26.5세에서 2015년 30세로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만을 위해 저출산 대책과 복지 확대에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은 점점 심화되고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 원인이 저출산·고령화인 이상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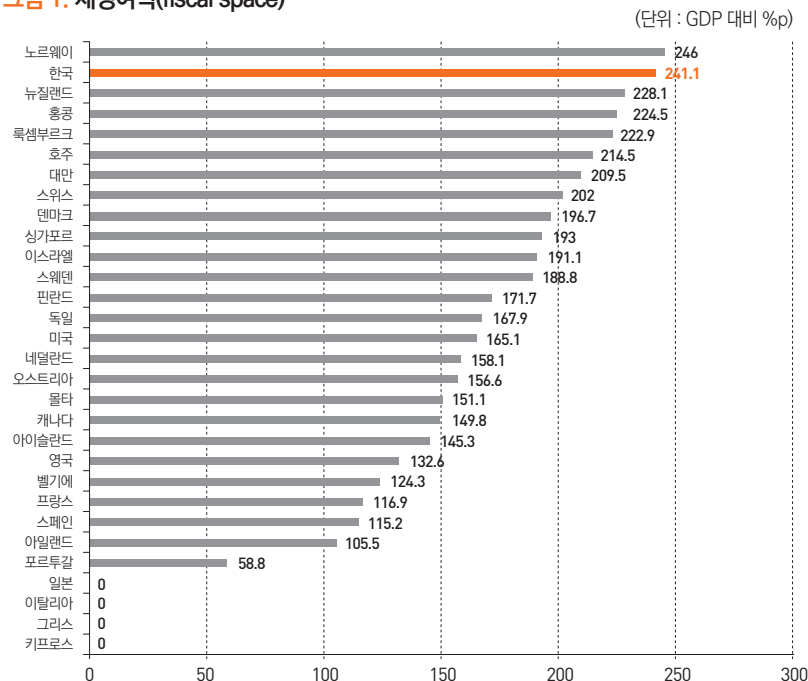


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IMF는 세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게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재정정책을 권하는 경우는 몇 나라에 불과한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다. IMF와 한국과의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비우호적인 인구구조 변화, 과도한 수출 의존, 기업부문의 취약점, 노동시장 왜곡, 낮은 생산성, 취약한 사회안전망, 가계부채 부담 등 구조적 역풍(structural headwinds)에 직면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재정 여력(considerable fiscal space)을 확보하고 있다고 IMF는 평가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각 나라의 재정여력을 평가한 것을 보면 한국은 노르웨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재정여력이 좋은 나라다. 그러므로 신정부의 중장기 재정정책의 과제는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IMF는 한국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재정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그림 1. 재정여력(fiscal space)



※ 주 : 재정여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될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과 현재 비율 간의 차이로 124%p를 초과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 : Moody's Analytics(2014년 5월 기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검토 필요

재정여력 확보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경기대응을 위한 단기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기금 여유 자금 활용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책과 사회복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증세 등을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증세 측면에서는 중장기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침체 국면에서 증세가 바람직한가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지만, 소비, 투자 등 민간 수요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증세를 바탕으로 한 정부 지출 확대는 균형재정 투자 승수 1의 유효 수요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 측면에서 재정의 분야별 재원 배분 비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한국재정의 특징은 SOC 등 경제예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반면, 보건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통해 성과가 낮은 경제사업 예산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로사업 등 경제사업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교통시설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 자원사업특별회계 등과 같이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

에 성과가 낮은 경제 예산을 축소하는 세출구조조정을 해도 거기서 나온 재원을 일반회계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사용하면 언젠가는 다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역할을 다한 기금·특별회계를 정비하면서, 이들 기금·회계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관련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법 등을 개정하여 일반회계 수입으로 통합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⁵⁾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재정 지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반면 경제성장률 둔화 등은 재정 수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재정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적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재정의 경기 안정화, 소득 재분배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유지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일시적 또는 항구적 지출 증가 요인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회복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 운용 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재정건전성 회복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여 추진해야**

5) 자세한 내용은 조영철, “일반재원 확대를 위한 부담금제도의 정비 방안,” 한국재정법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5.을 참조.

MONTHLY

재정이슈포커스 ANALYSIS

재정이슈포커스는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진들이
재정 현안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30 /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한 국고보조사업 효율화 방안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shhan@kpfis.kr

ANALYSIS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shhan@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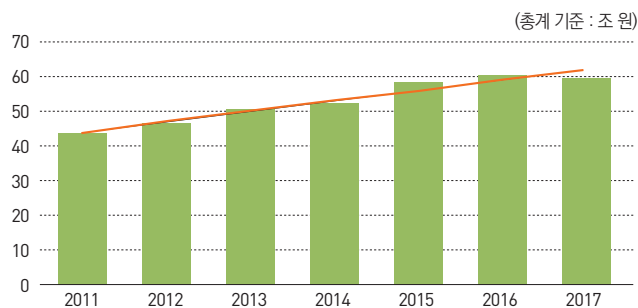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한 국고보조사업 효율화 방안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통합예탁기관으로서 예탁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은 재정과 금융, IT가 합쳐진, 공공부문의 첫 번째 핀테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6년 2월에 시스템 구축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국고보조금의 사업 구조 세분화와 실시간 집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실시하고, 보조사업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7년 59.6억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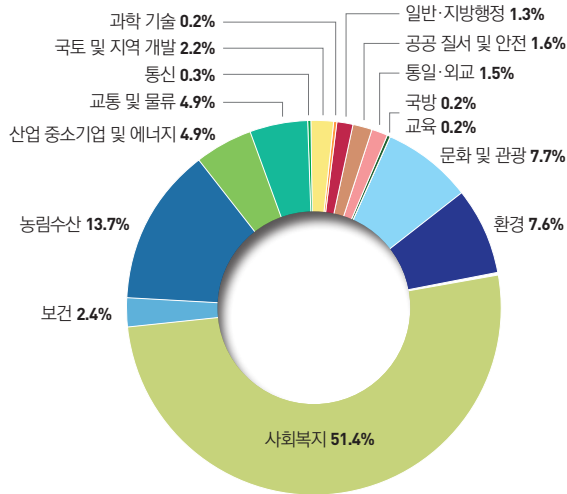
국고보조금 제도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것”(「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국가 아닌 사업수행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보조금은 부담금, 교부금, 장려비, 위탁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인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특정되어 그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사용되지만, 국고보조금은 특정목적재원으로 지출된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집행을 대행하도록 할 때, 공공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임에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된다.

그림 1. 연도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 :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

그림 2. 분야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 :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

2017년에 59.6억(국회확정예산 기준)으로 2016년 60.3억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95%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0조 6429억원(5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13.7%), 문화 및 관광(7.7%), 환경(7.6%) 순서로 보조금 규모가 크다.

국고보조금의 유형을 살펴보면, 시행주체를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직접보조금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민간단체, 대학 등에 재교부하는 간접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일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이 직접보조금 사업에 속하며, 공동양식어장사업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등이 간접보조금 사업에 속한다. 또한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지원인 경상보조금과 자산취득, 시설건축 등 자본경비에 대한 지원인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부담방식에 따라서 국가가 보조사업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과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로 나눌 수 있다.

선 지급·후 정산 지급 체계와 분산된 지급 주체의 문제

감사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2013년 8월) 결과 부정 수급 2300억 원 적발, 검찰·경찰 합동 조사(2014년 1월) 결과 부정 수급 3,200억 원 적발 및 253명의 구속 등 언론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부정 수급 사례와 중복 수급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 부정 사례는 허위 신청, 허위 증빙 등 다양하다. 사례 중에는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거나,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인건비를 빼돌리는 방식 등이 있다. 부정 수급 사례가 신문과 TV뉴스 등에 빈번하게 보도되면서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불리고도 있다.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선지급·후정산’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지급 체계이다. e-나라도움 도입 이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보조사업자가 활동을 하고 사후 정산을 받았다. 이 방식은 보조사업자의 활동 비용을 우선적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편의성이 있었지만,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일괄 지급 및 사후 정산 방식은 감시와 감독의 한계와 맞물려 국고 보조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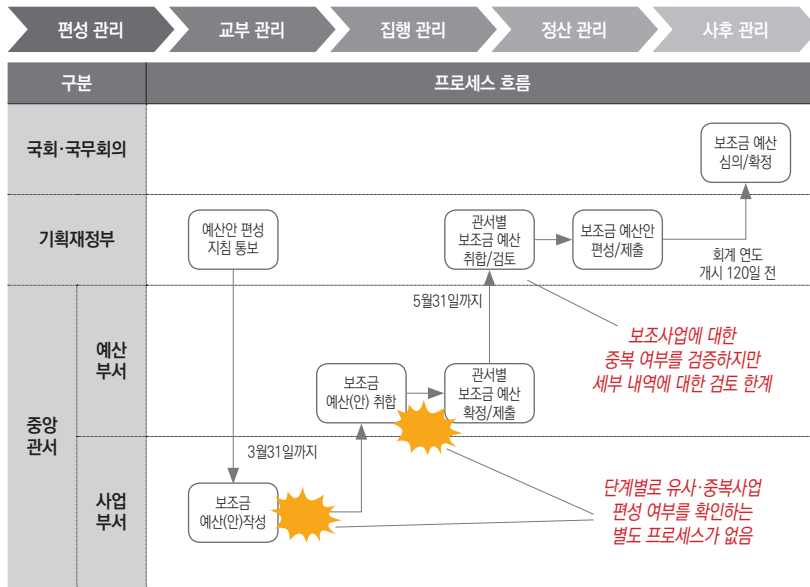
국고보조금의 지급 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점도 문제다.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보조금 내 칸막이현상이 심각하였다. 분산적인 보조금 관리와 집행은 국고보조금 중복 수급으로 연결되었다. 국고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중앙과 지방, 부처 간 영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사업 중복 수급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 간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예산 편성과 보조사업 신청 검토 시 중복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국고 보조사업명과 보조사업자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 수급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 수급 여부와 사업자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림 3>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 예산안을 작성하거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안을 취합할 때 중복사업의 편성 여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중복 여부를 검증하였지만 일부 사업명과 사업자 정보만이 공유되고 구체적인 내

선지급 후정산
지급체계는 모니터링의
한계로 국고보조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원인

용까지 공유되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허위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증빙 서류를 중복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수기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낮았다.

그림 3. 국고보조사업 편성 프로세스 내 문제점



자료 : 기재부(2015)

분산적인 보조금 관리와
집행은 국고보조금
중복 수급으로 연결

부정중복 수급 방지 체계 구축과 실시간 모니터링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교부,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선 지급·후 정산 방식과 분산된 지급 주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 3), 경제 관계 장관회의(14. 12,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 국가재정전략회의(15. 5. 13.)를 통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총사업비 352억 원)이 작년 2월부터 구축이 추진되었으며, e-호조, 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계 및 개선 작업이 병행 추진되었다. 2016년 4월 29일 보조금 법령이 개정되었고, 국고보조금 운영 지침이 2016년 8월 1일에 시행되었다.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2017년 1월부터 국고보조금의 사업 구조 세

분화와 실시간 집행 기능을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부정 수급 방지활동을 실시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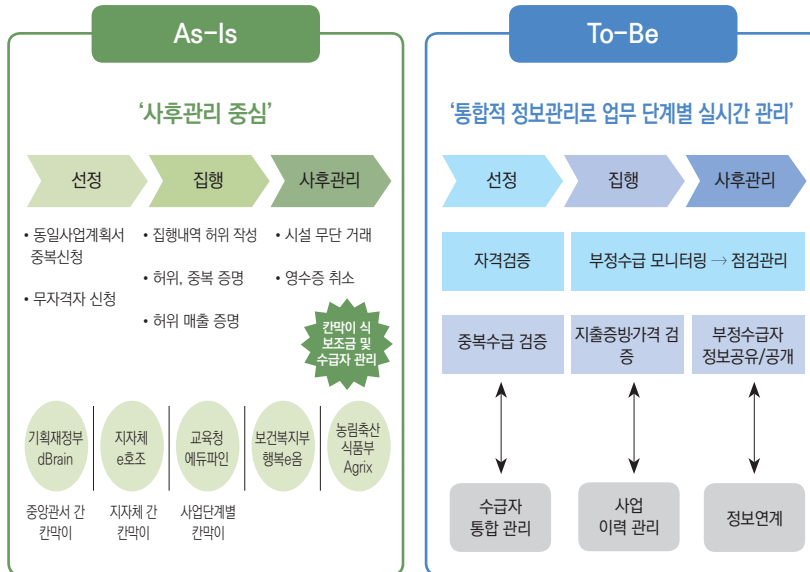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언론 보도, 감사원 e감사시스템을 분석하여 부정 수급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패턴을 e-나라도움에 적용하여 부정 수급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수행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불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이월로 처리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이 패턴을 e-나라도움에 적용하여 지급 계좌 관리를 통해 상세 이력과 진도 관리를 통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

온라인 지출 증빙으로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가격 부풀리기나 허위, 중복 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 증빙 시에 e-나라도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다른 보조사업에서 사용된 증빙서류는 재입력을 요구한다. 즉, 증빙 서류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을 e-나라도움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e-나라도움은 국세청과 금융결제원, 각 은행의 정보를 연계하여 부정 수급을 차단할 수 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표시하고 저장하고 있으며, 국세청 정보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 거래처의 휴업과 폐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의 정보와도 연계하여 사업자 번호와 예금주 실명 번호가 일치하는지도 검증한다.

e-나라도움으로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중복 수급도 억제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시에 사업자가 동일·유사사업을 신청하였는지를 시스템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 동일·유사사업 신청 여부를 찾아내려면 단순히 사업명을 통해서 찾아낼 수는 없으며, 관리 항목을 내역사업까지 구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나라도움에서는 내역사업까지 사업 단위가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 관리 DB를 구축해 국고보조금 수급자 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급자 식별 코드를 생성한다. 정리하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부정·중복수급방지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고)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부정중복 수급 억제

그림 4.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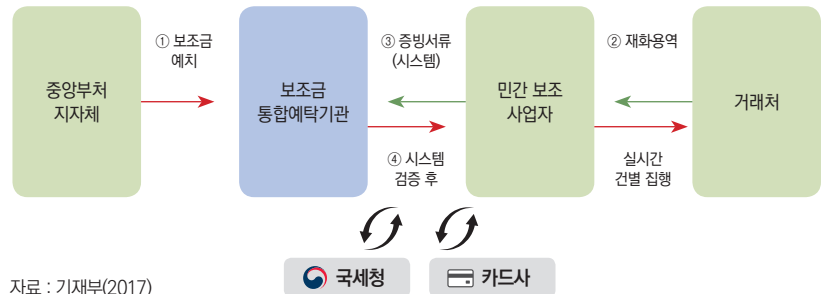
자료 : 기재부(2017)

시스템을 통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에서
선시행, 후지급 방식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

둘째,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추진절차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보조금의 선정부터 교부, 집행, 정산 등 각 절차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e-나라도움에서는 보조금 배정, 교부, 이체 실적을 일 단위로 집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이 일괄 지급되고, 사후정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e-나라도움의 도입 이후에는 실시간 건별 지급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실시간 건별 지급을 금융망 연계를 통해서 실거래 증빙과 검증, 중복 체크가 이루어진다.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고). 특히 ‘선지급, 후정산’방식에서 ‘선시행, 후지급’ 방식으로 바뀐 것이 큰 변화이다. e-나라도움의 구축 이후에는 증빙자료 온라인 연계등록을 통해 거래처 계좌에 보조금을 예치하고, 수급자가 시스템에 증빙 정보 등을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확인 이후 건별로 실시간 지급한다. 시스템 상에서 대상 사업을 선택해서 검색하면, 비목별 재원별로 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 기재부(2017)

예산사업구조를 세부사업단위에서 내역 사업 단위로 세분화하여 중복수급 모니터링 실시

셋째, 사업 구조를 세분화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예산사업 구조를 세부 사업 단위에서 '내역사업' 단위(약 8만 개)로 세분화하였다. 내역사업이란 중앙관서의 세부사업(project)을 구성하는 실제 사업 관리 단위를 의미한다. 내역사업으로 사업 속성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것이나 중복된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기존에는 세부 사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질적인 내역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매핑(mapping)하여 국고 보조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내역사업 관리를 통해서 부처 내부와 외부의 유사·중복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중복 수급건을 찾아낼 수 있다.

넷째, 국고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보조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단지 홈페이지에 특정 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들은 공개할 정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도 있다. 또한 정보 공개는 징벌적 수단으로도 활용되는데, 부정 수급자 명단과 수급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시스템 내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상세 보조금 집행 규모에 대해서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 학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으로 예약금을 관리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은 국고보조금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통해서 예약금을 운영한다. 전용계좌는 오직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자금의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이며, 전용카드를 통해서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 제5항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보조금예약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과제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이 국가재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점은 부정 수급과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신호 발송(signalling)만으로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야나 지급기관에 따라서 중복 신청을 할 수 있는 보조금 유형을 추출하고, 중복 수급 패턴을 파악하여 ‘보조금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침 마련에 재정 연구자, 공무원, 법률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고보조금 지출 증빙 데이터를 구축하고 2017년부터 축적되는 국고보조금 내역사업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부정·중복 수급에 대한 점검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부정 수급 중 지출 증빙 관련 부정 수급 비율이 약 18.7%이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적 운영을 억제할 수 있다.

물론 시스템 시행 초기에는 일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e-나라도움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초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더욱 구체화하고 사용자지원센터의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단에서는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 활성화, 매뉴얼 구체화, 분야·유형별 사용자 대응 등을 통해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스템 정착이 완료되면,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게 되어 업무 효율성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통합예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예탁금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e-나라도움 시스템 이전에는 각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이 분산되어 있었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예탁금이 통합 관리되고 있다.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높은 예탁금 이자를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는 국고수입으로 귀속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신호 발송만으로도 부정수급 방지효과는 클 것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201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기획재정부(2017).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



김희정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행정주사
crail999@korea.kr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으로 재정 수입 증대 기여

- 시간_2017년 4월 24일 오후 2시
- 장소_국토교통부(정부세종청사)

개발부담금이란 일정한 개발사업의 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환수금으로써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수한다는 취지로 1980년대 말에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누락방지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징수 시스템을 개선하는 개발부담금 선진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그동안 누락되었던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에 개발부담금 관련 제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정 주무관을 만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 과정 및 그 성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Q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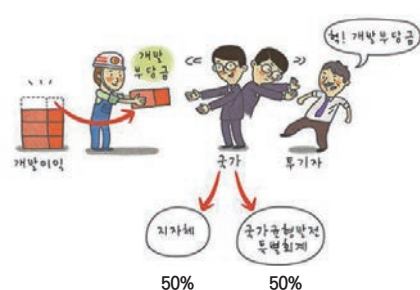
A. 저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희정 주무관입니다. 저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 업무를 맡은 지는 2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Q 노후된 개발부담금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고 수입 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예산성과금 우수 사례로 선정되신 소회는 어떠하신가요?

A. 우수 사례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혼자만의 힘으로 얻은 성과가 아니며, 여러 기관과 담당자들의 도움으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맡은 업무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개발원료 → 토지가지 상승



Q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부담금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개발부담금 선진화 사업의 핵심은 개발부담금의 누락 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의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스템 개선 이전에는 업무 담당자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부서로부터 공문으로 통보 받는 과정에서 대상사업 통보가 일부 누락되어 부담금 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3년에 개발된 시스템이 노후되면서 개발부담금을 엑셀 또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산정하는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중앙정부(따로 법률로 정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귀속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을 지방세외수입시스템과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에 이중으로 입력해야 하는 업무수행상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부서) 간 협업체계(TF)를 구축하고, 2015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개발부담금
선진화 사업 추진

그림 1.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점



Q 구체적인 시스템의 개선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선진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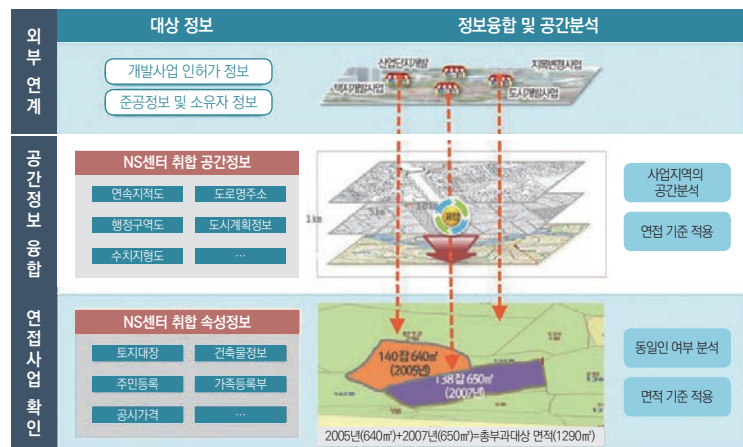
첫째,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 인허가 정보 연계입니다. 건축, 주택, 정비사업의 인허가정보를 포함하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의 연계를 통해 부과 대상사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처럼 정보 요청 공문을 작성할 필요도 없고, 통보받은 정보를 시스템

에 입력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택·정비사업 인·허가 정보를 지연·누락 없이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개발부담금을 누락 없이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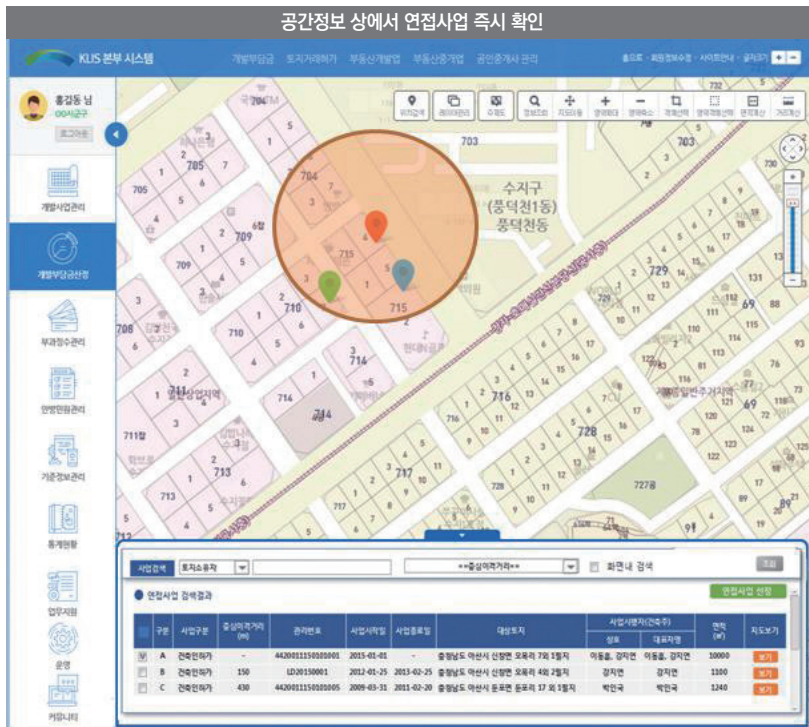
둘째,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부담금 종합 분석 및 산정 기능 강화입니다. 지가변동률, 부과 기준 등의 기준 정보와 면적, 지가, 소유자 등의 토지 대장정보, 그리고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정보를 매칭시켜 개발부담금을 자동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지자체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자는 인·허가 정보와 사업 시행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보고 부과대상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 회피 행위가 의심되는 연결사업¹⁾의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작은 출장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개발사업의 종류, 용도,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이가 개발부담금 부과 회피를 위해 개발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정보 연계,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스템 개선 추진

그림 2. 개발부담금 업무에 공간정보 융합



1) 동일인(법인을 포함,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한다)이 연결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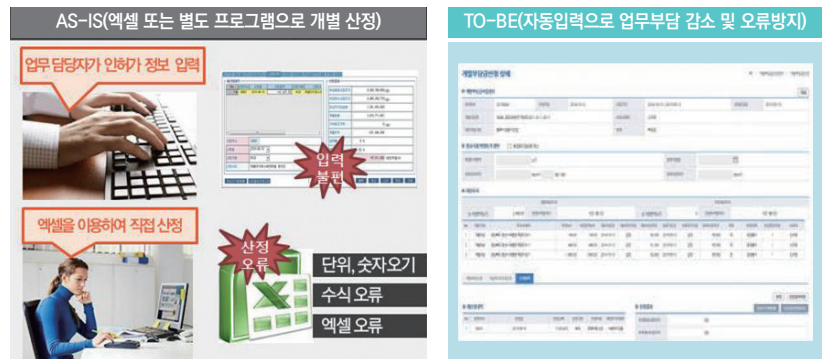
회계시스템 연계 구축,
업무편의를 위한 기능
확충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증진

셋째, 부과·징수 정보의 이중 입력 방지를 위한 회계시스템 연계 구축입니다. 기존 시스템 하에서는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부과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각각 접속하여 입력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민원인들이 각각 부과된 부담금 중 하나만 납부하는 사례도 존재하여 수납 결과도 이중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개발부담금 시스템에서 부담금 정보를 한번 입력하면 각 회계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구축하였고, 징수 정보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부담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리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사용자 업무편의를 위한 자동 산정·지원 기능 확충입니다. 기존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자는 시스템 노후화로 인하여 엑셀 및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입력 오류와 숫자 오기, 수식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기존정보,

토지대장 및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부과금을 자동 산정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림 3. 개발부담금 산정의 자동화 및 정확성 확보



각 분야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의견수렴을 통한
협업으로, 적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

Q 말씀해주신 설명을 듣다 보니 여러 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외수입시스템’ 등의 외부 관계자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센터(NS센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의 내부 담당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의견 수렴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지자체에서 개별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정보(IP, Port 등)를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협업 과제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연계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Q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 개발 부담금 선진화사업으로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셨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 수입의 증대 또한 중요한 성과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의 실시간 연계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인·허가 정보가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여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이 방지되고, 공간정보 기반 연접사업 분석으로 개발부담금 회피 행위가 차단되는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 2,500억 원의 2%로 추정되는 50억 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가적인 시스템 발전이나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향후 토지 개발 관련 인·허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인지·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기관(부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및 협조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구축 중인 '개발행위허가시스템' 등 토지 인·허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통계 분석 시스템 고도화와, 시스템 속도 향상, 조기 납부 환급금 자동 계산 기능 등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토지 개발 관련
인허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부담금 알아보기



산업통상자원부
5조 5,338억 원
(27.6%)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2조 3,038억 원
전기 사용자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징수



금융위원회
3조 6,892억 원
(18.4%)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1조 1,484억 원
공적자금 부채의 상환 재원
조달 등을 위한 부담금



보건복지부
3조 671억 원 (15.3%)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 671억 원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납부

2017년도 징수 계획

20조 414억 원
(‘16년 계획 대비 0.4% 감소)

- 징수 계획 상위 6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금
융위원회화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
축산식품부)의 부담금 총액은 17조 423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85.0%를 차지

●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7,498억 원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해제지역
개발자 및 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

● 농지보전부담금

2,800억 원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
하려는 자 등에게 부과

문화체육
관광부
7,005억 원
(3.5%)

고용노동부
7,241억 원
(3.6%)

농림축산식품부
1조 379억 원 (5.2%)

국토교통부
1조 1,262억 원 (5.6%)



환경부
2조 5,881억 원 (12.9%)

● 물이용부담금

8,778억 원
각 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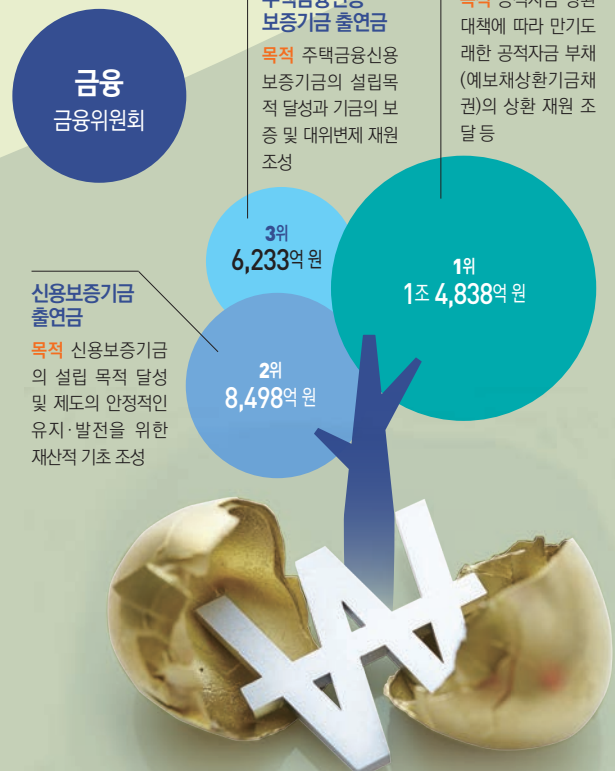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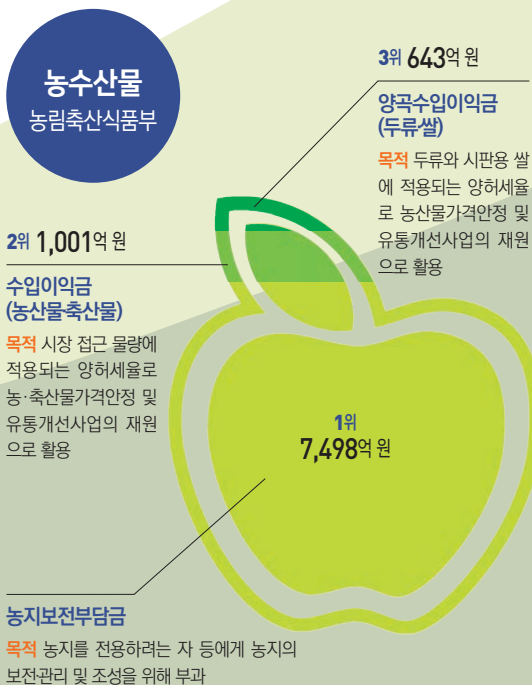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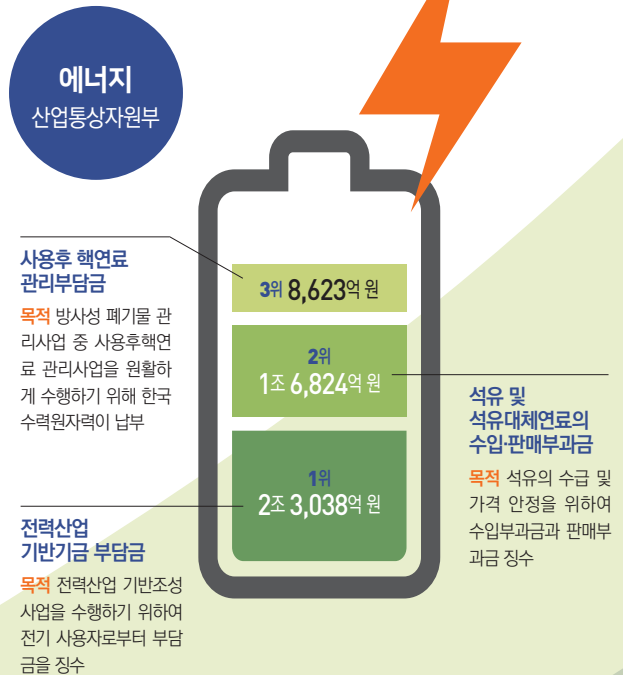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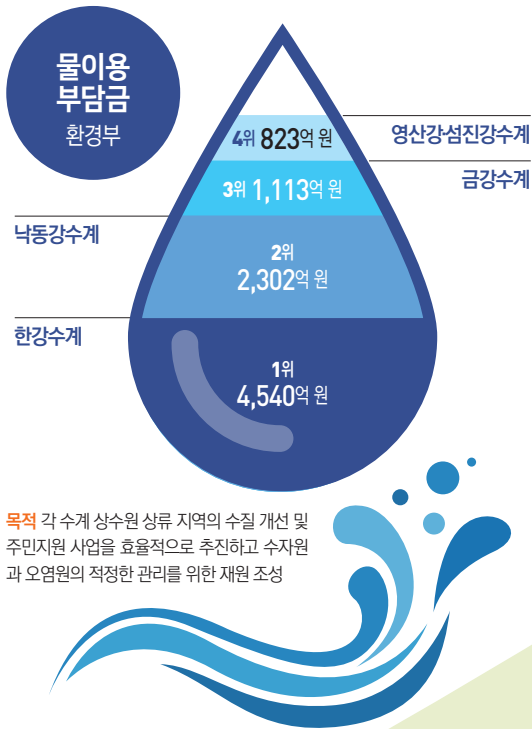
자료출처 :
2017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기타 부처 순위

9위 교육부 4,878억 원(2.4%)
10위 미래창조과학부 4,166억 원(2.1%)

11위 기획재정부 1,633억 원(0.8%)
12위 중소기업청 1,287억 원(0.6%)
13위 산림청 1,049억 원(0.5%)
14위 원자력안전위원회 892억 원(0.4%)

15위 외교부 878억 원(0.4%)
16위 해양수산부 715억 원(0.4%)
17위 행정자치부 157억 원(0.1%)
18위 식품의약품안전처 89억 원(0.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이해관계자
에게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

1. 부담금의 개념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¹⁾ 즉, 특정한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법적 의무다.

부담금은 1961년 ‘도로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및 산림사업에 따른 보안림 수익자 부담금’ 등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시행하여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의

2. 부담금의 종류

부담금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설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은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 비용을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수익자 부담금’은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유도성 부담금’은 직접적인 규제 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 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에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배출부과금’ 등이 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담금 수는 총 89개로 2016년도 94개에서 5개가 감소하였다. 부담금 개수가 감소한 이유는 ‘총량초과 부과금(한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금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영산강·섬진강수계)’과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대기)’ 등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17년 징수계획된
부담금 수는 모두 89개**



'17년 기준 89개
부담금 중 환경부
소관이 18개로
가장 많음

〈표 1〉 2017년 소관 부처별 부담금 종류

부처	부담금명
금융위원회(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기획재정부(2)	외환건정성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미래창조과학부(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방송통신발진기금 분담금
교육 (1)	학교용지부담금
외교부(2)	국제교류기여금,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납부금
행정자치부(1)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 수익자분담금
문화체육관광부(7)	출국 납부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회원제골프장 사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관광지 등 지원 시설 이용자 부담금, 관광지 등 지원 시설 원인가 부담금
농림축산식품부(7)	농지보전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수입이익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대체초지조성비, 축산물수입이익금
산업통상자원부(9)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보건복지부(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경부(18)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석면피해구제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담금(EPR, 전기·전자제품), 환경개선부담금, 총량초과부과금(기타수계),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원인가부담금(수도법, 하수도법)
고용노동부(2)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토교통부(17)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분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금,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소음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혼잡통행료, 고통유발부담금, 도시 개발 구역 밖의 기반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입지, 택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익자부담금(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7)	수산물수입이익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방제분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산림청(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임산물수입이익금
중소기업청(1)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식품의약품안전처(1)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비용 부담금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16.

3. 부담금의 징수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²⁾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세 가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첫째, 부담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 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셋째,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반면,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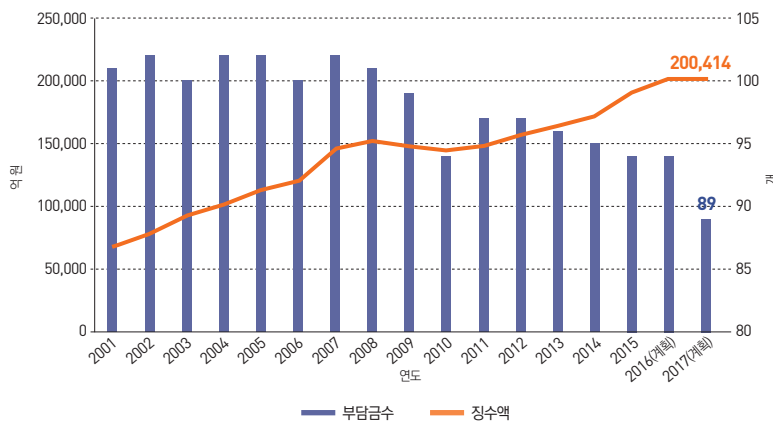
〈표 2〉 부담금과 조세 비교

구분	부담금	조세
용도	특정 사업을 위한 경비	정부의 일반 사무를 위한 내용
부과 대상	특정 사업과 관계있는 자	모든 국민
부담 기준	특정 사업의 소요경비 등	세금 부담 능력

부담금은 사업의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다름

정부에서 징수한 부담금 추이를 보면, 2001년 총 6조 7,683억 원에서 2015년 19조 1,076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총 부담금 개수는 101개에서 94개로 감소하였다. 2017년 계획상으로 징수액은 20조 41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1. 부담금 징수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각 연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각 연도.

2) 조세(25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14개)와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11개)로 구성됨

〈표 3〉 부담금 징수 추이

(단위 : 개, 억 원)

연도	구분 개수	징수규모			
			귀속주체별		
			중앙	지자체	공단 등
2001	101	67,683	53,745	6,789	7,149
2002	102	79,013	59,068	9,760	10,185
2003	100	93,006	67,652	12,193	13,160
2004	102	101,509	75,249	13,311	12,948
2005	102	112,647	89,289	12,628	10,730
2006	100	121,132	94,674	11,643	14,814
2007	102	145,882	109,850	17,825	18,207
2008	101	152,707	120,057	13,663	18,987
2009	99	148,047	117,740	13,277	17,031
2010	94	144,591	125,854	13,947	4,790
2011	97	148,101	128,894	13,732	5,476
2012	97	156,690	135,973	15,073	5,644
2013	96	163,934	142,322	15,775	5,837
2014	95	171,797	149,032	16,533	6,232
2015	94	191,076	165,165	18,671	7,239
2016(계획)	94	201,203	177,492	16,658	7,053
2017(계획)	89	200,414	174,494	19,275	6,645

자료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각 연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각 연도.

’17년 기준 총 징수
계획 중 산업통상
자원부 소관 금액이
5조 5,338억 원으로
가장 많음

총 89개 부담금을 18개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환경부가 18개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가 17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소관하고 있는 환경부는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에 5,350억 원을 부과하고, 이어서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에 4,540억 원을 부과한다.

징수금액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많은 5조 5,33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위원회가 3조 6,892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2조 3,038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부담금은 1개였지만, 모든 부담금 중에서 단일 징수 금액이 가장 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3조 671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표 4〉 2017년 소관부처별 부담금 징수계획

(단위: 개, 억 원, %)

부처	개수	징수액(비율)	부처	개수	징수액(비율)
환경부	18	25,881(12.9)	외교부	2	878(0.4)
국토교통부	17	11,262(5.6)	고용노동부	2	7,241(3.6)
산업통상자원부	9	55,338(27.6)	산림청	2	1,049(0.5)
금융위원회	8	36,892(18.4)	교육부	1	4,878(2.4)
농림축산식품부	7	10,379(5.2)	행정자치부	1	157(0.1)
해양수산부	7	715(0.4)	보건복지부	1	30,671(15.3)
문화체육관광부	7	7,005(3.5)	중소기업청	1	1,287(0.6)
기획재정부	2	1,633(0.8)	식품의약품안전처	1	89(0.0)
미래창조과학부	2	4,166(2.1)	원자력안전위원회	1	892(0.4)
계	89개, 20조 414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16.

부담금은 해당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징수한 부담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귀속 주체의 수입으로 계상되고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세외 수입으로 귀속되며, 2017년 전체 계획 중 17조 4,494억 원(87.1%)은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이 중 기금 수입으로 13조 9,645억 원, 특별회계 수입으로 3조 4,849억 원이 각각 귀속된다. 총 부담금 중 1조 9,275억 원(9.6%)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이 중 1조 1,158억 원은 광역자치단체로, 8,117억 원은 기초자치단체로 각각 산입된다. 나머지 부담금 6,645억 원(3.3%)은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17년 징수계획된
부담금 중 87% 이상이
중앙정부로 귀속됨**

4. 부담금의 사용

〈표 5〉 2017년 계획 상 귀속 주체별 부담금 수입액

(단위: 억 원, %)

구분	수입액	계
중앙정부	기금	139,645
	특별회계	34,849
지방자치단체	광역	11,158
	기초	8,117
공공기관 등	6,645	6,645
계	200,414	200,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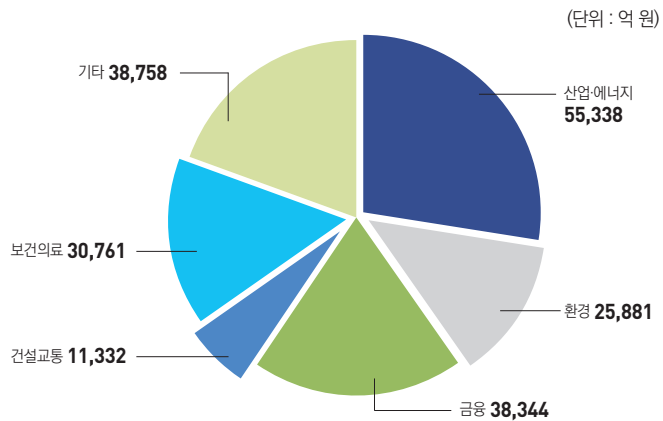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16.



'17년 계획된 부담금 중 5조 5,338억원은 산업·에너지 분야에 사용

징수한 부담금은 각 부담금의 설립 취지와 성격에 맞게 사용하도록 법
적근거를 가지고 있다. 2017년 계획된 부담금의 사용 분야를 살펴보면,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5조 5,338억 원, 금융 분야에서 3조 8,344억 원,
보건의료 분야에서 3조 761억 원, 환경분야에서 2조 5,881억 원, 건설교
통 분야에서 1조 1,332억 원, 그 외 기타분야에서 3조 8,758억 원이 사
용될 예정이다.

그림 2. 2017년 부담금 분야별 사용액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16.

분야별 부담금 추이를 보면, 보건의료분야 부담금이 2001년 99억 원에서 2017년(계획) 3조 761억 원으로 연평균 43.1% 증가하였다. 이유는 2002년 이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중 담배에 대한 부담금이 기존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산업·에너지 분야는 가장 많이 부담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1년 3조 1,119억 원에서 2017년(계획) 5조 5,338억 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하였다.

〈표 6〉 부담금 분야별 사용액 추이

(단위 : 억 원)

구분 연도	사용액	분야					
		산업·에너지	환경	금융	건설교통	보건의료	기타
2001	67,683	31,119	11,559	5,905	5,404	99	13,595
2002	79,013	27,459	14,282	6,644	5,792	5,109	19,727
2003	93,006	22,636	17,843	14,143	6,909	7,020	24,454
2004	101,509	25,208	19,591	15,633	8,024	8,061	24,992
2005	112,647	29,420	21,526	18,179	8,200	12,921	22,400
2006	121,132	31,340	21,046	17,368	9,118	14,940	27,321
2007	145,882	33,833	24,259	22,489	14,170	15,486	35,645
2008	152,707	35,464	24,323	26,105	9,162	16,369	41,283
2009	148,047	36,258	25,323	28,057	10,089	16,380	31,941
2010	144,591	40,390	22,842	29,264	8,483	15,848	27,763
2011	148,101	40,528	23,571	30,913	8,827	15,689	28,573
2012	156,690	43,374	25,025	34,269	8,836	15,497	29,689
2013	163,934	45,341	26,171	36,905	9,439	15,333	30,745
2014	171,797	47,441	26,330	37,864	8,122	16,284	35,757
2015	191,076	51,278	27,649	38,288	8,128	24,782	40,951
2016(계획)	201,203	59,926	25,197	39,148	11,094	29,154	36,693
2017(계획)	200,414	55,338	25,881	38,344	11,332	30,761	38,758

자료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각 연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각 연도

**’01년 이후 보건복지
분야의 부담금 증가율은
43.1%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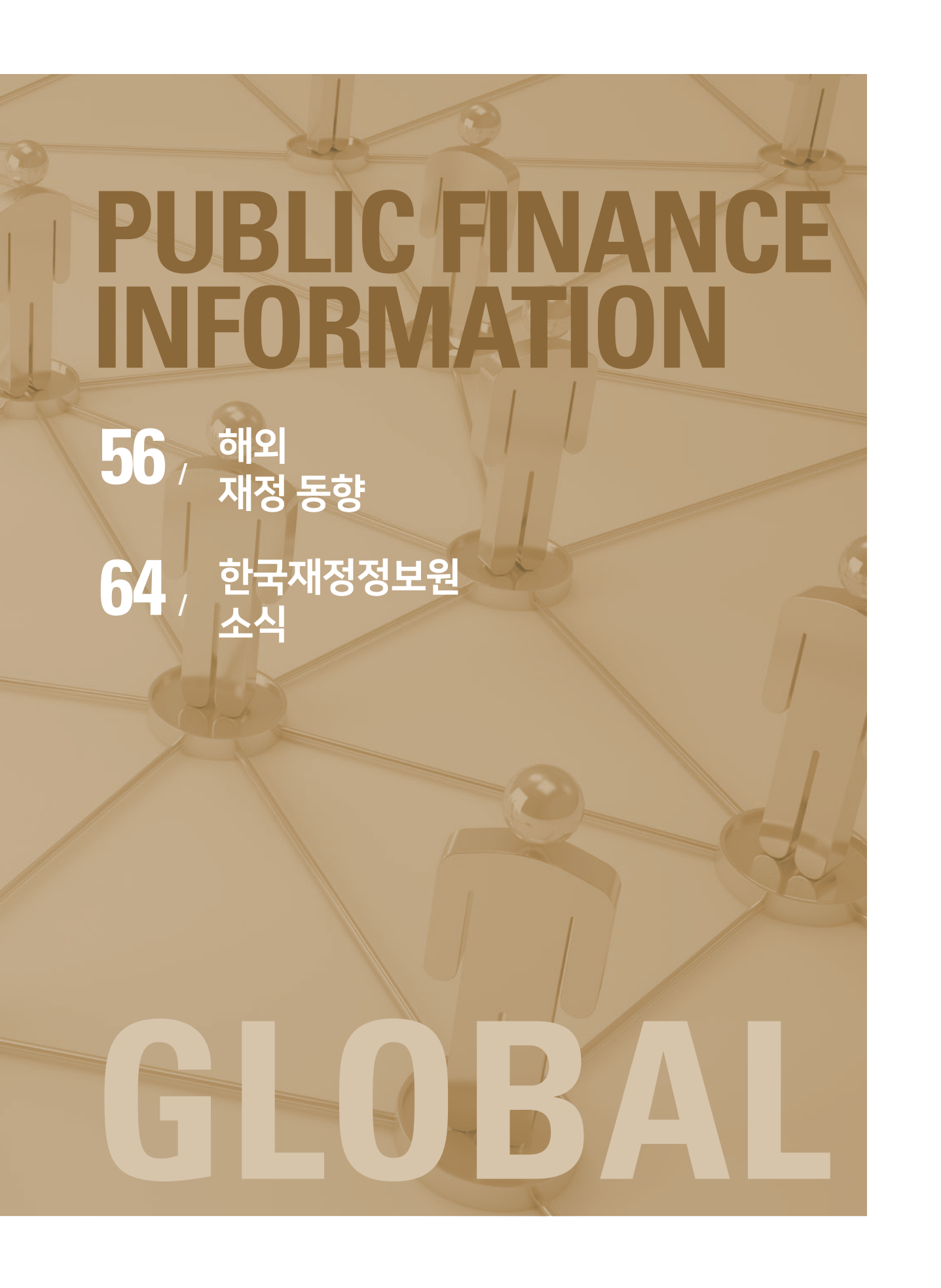
※ 4월호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세션 중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의 취득연월이 2016년 12월로 서술되었습니다. 실제 취득연월은 2006년 12월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MONTHLY

동향과 소식

GLOBAL FISCAL TRENDS & KPFIS NEWS

해외 재정 동향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새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56 / 해외
재정 동향

64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GLOBAL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OECD 국가들의 평균 2016년 조세격차(tax wedge)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

- OECD, Taxing Wages 2017 (2017.4.17.)

- OECD는 2017년 4월 35개 회원국들의 근로자 임금 및 조세 부담, 조세격차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간
- ▶ OECD 국가의 평균 조세격차는 2015년 대비 2016년 소폭 감소하여 36%를 기록하였으며 조세격차의 변화의 주요 원인은 개인소득세의 변화로 분석됨

참고

조세격차(tax wedge)

- 조세격차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노동자가 실제 받는 임금, 즉 실질 임금 간의 차이를 말하며 실질세 부담으로 표현되기도 함
- 조세격차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총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에서 세대가 받는 급여(benefits)를 제한 것으로 총인건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로 표현

$$\text{조세격차 (\%)} = \frac{\text{조세} + \text{사회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text{사용자 부담분)} - \text{현금보조금}}{\text{노동비용(임금} + \text{사회보장기여금 사용자 부담분)}}$$

- 일반적으로 조세격차가 클수록 노동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35개 OECD 가입국 중 20개 국가에서는 2015년에 비해 조세격차가 확대되고 나머지 14개국에서는 감소
- ▶ 20개국에서의 조세격차 증가는 개인소득세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특히 면세자 축소 및 세액 공제 감소로 인한 소득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
- ▶ 반면 실제 명목세율을 높은 나라는 덴마크와 그리스 2개국에 불과
- ▶ 조세격차가 감소한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세 축소가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소로 조세격차 감소



해외 재정 동향

〈표 1〉 총 조세격차 비교

(단위 : %)

국가 ¹	총조세격차	소득세	사회보장 기여금	
			근로자	고용주 ²
독일	49.4	15.9	17.3	16.2
오스트리아	47.1	10.8	13.9	22.4
프랑스	48.1	10.8	10.5	26.8
영국	30.8	12.6	8.4	9.7
일본	32.4	6.8	12.5	13.1
미국	31.7	16.9	7.1	7.7
한국	22.2	5.2	7.6	9.4
캐나다	31.4	13.8	6.8	10.8
OECD 평균	36.0	13.4	8.2	14.4

※출처 : 국가별 제공자료,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6(No.100)

평균 노동자 소득 수준의 무자녀 독신가구 기준

1. 국가는 노동비용 기준 내림차순 2. 개인소득세 포함

● 과세체계와 근로자의 직업훈련 간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는 직업훈련 동기를 감소시킴을 시사함

▶ 많은 국가들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업 관련 교육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구직자, 저소득자에 대해 효과가 제한적임

● 자녀 유무에 따라 OECD국가 중 33개국에서 유자녀 가구가 무자녀 단독 가구보다 세금을 덜 부담하며 한국은 유자녀 가구와 단독가구간의 세금 부담 차이가 35개국 중 다섯 번째로 작음

▶ 2016년 유자녀 가구의 OECD 평균 조세격차는 26.6%로, 무자녀 단독가구보다 9.4%p 낮음

▶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단독 가구 간 조세격차는 2015년에 비해 약간 상승

▶ 한국은 2015년 기준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무자녀 단독 가구 간의 조세격차의 차이가 2.2%p에 불과

〈표 2〉 OECD 주요국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

(단위 : %)

국가	2자녀 외벌이가구 ¹ 총조세격차	독신가구 ² 총조세격차	국가	2자녀 외벌이가구 ¹ 총조세격차	독신가구 ² 총조세격차
프랑스	40.0	48.1	영국	25.8	30.8
오스트리아	36.5	47.1	미국	20.8	31.7
독일	34.0	49.4	한국	20.0	22.2
일본	27.1	32.4	캐나다	11.9	31.4
			OECD 평균	26.6	36.0

※출처 : 국가별 제공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6 (No. 100)

1. 평균임금 수준에 있는 2자녀 외벌이 가구 조세격차 2. 평균임금 수준에 있는 독신가구 조세격차



해외 재정 동향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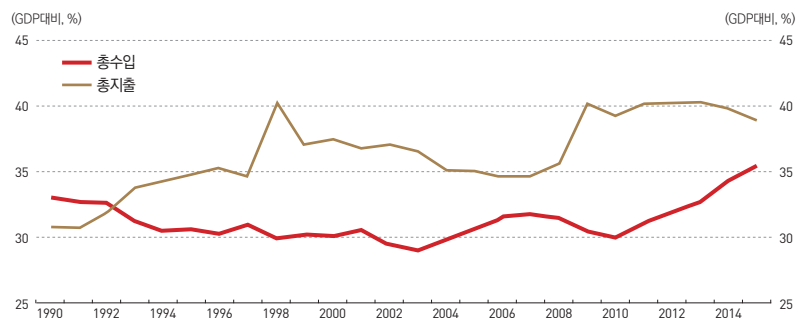
인적자본 개발을 장려하는 조세 지출 정책 외에도 직접적인 정부 지출을 늘려 인적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외별이 2자녀 가구와 독신가구 간 조세 격차의 차이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만큼, 출산 장려를 위해서 외별이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의 여지가 있음

일본, 재정 건전화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 OECD, OECD Economic Surveys of Japan (2017.4.13.), pp38-63

- OECD는 2017년 발간한 일본경제 동향 조사 자료에서, 정부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에서 예상한 시기인 2024년보다 길게 기초재정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일본 정부의 총 정부부채는 2015년 기준 GDP의 216%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순부채는 GDP의 118%로 세 번째로 높음
- ▶ 실질 순이자지급 비용은 2015년 GDP 대비 0.4%였으며, 이는 OECD 평균인 2%보다 낮으나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등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
- ▶ 정부부채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재정건전화 작업이 권고됨

그림 1. 재정 수입보다 재정 지출의 빠른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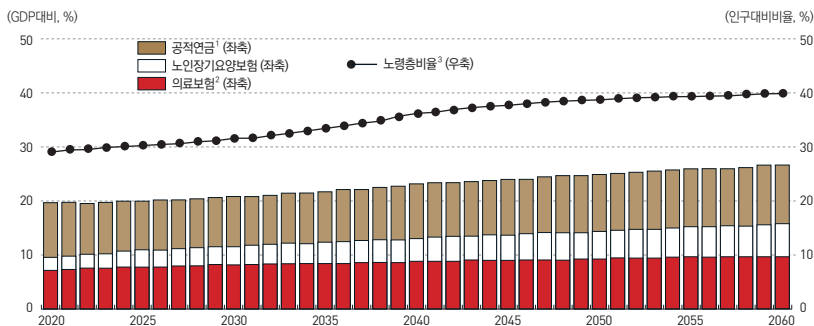


※출처 : OECD(2017c),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database)

● 일본 정부의 재정 불균형은 급격한 노령화에 기인

- ▶ 1991년에서 현재까지 복지비 지출은 GDP의 11%에서 23%로 증가했고 이 중 연금 지출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 80%에 달함
- ▶ 일본의 공공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출 감축, 세율 인상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림 2. 노령화와 관련된 사회보장 비용은 증가세 유지



※출처 : Fiscal System Council(2015)

Fiscal System Council은 유럽의회(2012)의 방법론에 따라, 현재 체계에 근거하여 추산함. 노령화와 관계된 지출은 연금처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1인당 지출 프로그램으로 정의

1. 공적연금지출은 일본 후생노동성(2014)에서 실시한 계리적 평가에 근거
2. 기초생활제도의 의료지원도 의료보험에 포함
3. 총인구 중 65세 초과 인구의 비중

● OECD는 일본에게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지출 측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개혁, 공적연금 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등의 세가지 방안을 제시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혁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담 증가로 인해 일본은 OECD국가 중 보건 의료 지출 수준이 여덟 번째로 높으며, 지출 증가 역시 유럽 주요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의약 및 의료 상담 제도 개선이, 장기요양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병원 외 장기 요양 제도 도입이 최우선적으로 필요

● 공적연금 개혁

- ▶ 일본의 연금보험 수급 시작 연령은 남성과 여성 각각 2025년과 2030년 65세로 상향 조정 될 예정이나 일본의 평균 예상수명이 83.7세임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못함
- ▶ 수급 연령 상향 조정 일정을 앞당기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높이는 방안이 권고됨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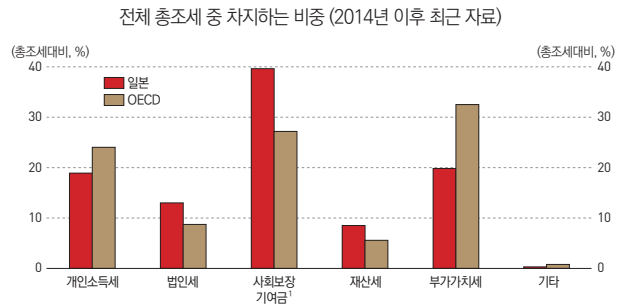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 ▶ 일본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의 1.6%에게만 적용되어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보장 대상 범위가 좁으면서도 높은 수급액 수준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문제가 있음
- ▶ 수급액을 줄이는 동시에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권고

●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세 인상, 개인소득세 개혁, 환경 관련 조세 기반 확충 등이 제시됨

- ▶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안정적인 조세 수입원이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적고, 노령층의 부담이 더 큰 만큼 세대 간 형평에도 기여하므로 세율 인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 일본에서 개인소득세가 전체 세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인 24%에 못 미치는 19%에 불과하며, 이는 개인소득세 면세 범위가 넓고 소득 공제 항목이 고소득 가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 ▶ 따라서 면세 범위 축소, 소득공제 제도 개편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환경관련 조세 기반 확충은 세입 증가와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대기의 질 향상과 같은 기타 환경 목표도 달성 가능

그림 3. 일본의 조세 수입은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음



※출처 : OECD(2017j), OECD Tax Statistics(database)

1. 사회보장기여금은 기타 개인소득세를 포함

◆ 시사점

한국 역시 부채 증가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 효율성 제고, 수입 확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G20 국가 중 가장 높으나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 CBO,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orporate Income Tax Rates (2017. 3. 17.)

● 미국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각국의 법인 소득세제를 비교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

- ▶ 기업이 경영활동을 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세율을 명목세율, 평균세율, 실효한계법인세율로 나누어 G20 국가와 비교한 결과를 제시
- ▶ 2012년 미국의 실효한계법인세율(이하 실효법인세율)은 19%로 G20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미국의 명목 법인세율 최고구간보다는 20%p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참고

기업에 대한 세제와 기업의 의사결정

-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법에 명시된 명목 세율과 함께 조세 우대 항목, 누진세, 비법인세 등 조세시스템의 영향을 받음
- 평균법인세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총량임
- 실효한계법인세율은 추가적인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의미
- 기업이 법률·회계적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협의의 명목세율을 검토
- 특정 국가에서의 대형 또는 장기투자 착수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평균법인세율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확장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한계법인세율을 고려

〈표 3〉 2012년 G20 국가의 법인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a		평균 법인세율 ^b		실효 법인세율 ^c	
미국	39.1	아르헨티나	37.3	아르헨티나	22.6
일본	37.0	인도네시아	36.4 ^d	일본	21.7
아르헨티나	35.0	미국 ^e	29.0	영국	18.7
남아프리카	34.6	일본	27.9	미국	18.6
프랑스	34.4	이탈리아	26.8	브라질	17.0
브라질	34.0	인도	25.6	독일	15.5
인도	32.5	남아프리카	23.5 ^d	인도	13.6
이탈리아	31.4	브라질	22.3	멕시코	11.9
독일	30.2	러시아	21.3	인도네시아	11.8
호주	30.0	한국	20.4	프랑스	11.2
멕시코	30.0	멕시코	20.3	호주	10.4
캐나다	26.1	프랑스	20.0	중국	10.0
중국	25.0	터키	19.5	남아프리카	9.0
인도네시아	25.0	중국	19.1	캐나다	8.5
한국	24.2	호주	17.0	사우디 아라비아	8.4
영국	24.0	캐나다	16.2	터키	5.1
러시아	20.0	독일	14.5	러시아	4.4
사우디 아라비아	20.0	영국	10.1	한국	4.1
터키	20.0			이탈리아	-23.5

※출처 : CBO (KPMG International, OEC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xford University Center for Business Taxation 데이터 활용)

- 명목법인세율은 법정 세율이며 최고세율은 최고과세 구간에 있는 추가 과세소득 1달러에 붙는 세율을 의미
- 평균법인세율은 기업이 소득에 비례해 내야 하는 법인소득세의 총량을 의미함. 미국을 제외한 G20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에 법인을 소유한 미국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임. 미국의 평균세율은 미국에 법인이 있는 외국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율을 의미하며,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미국의 법인세에 근거함
- 실효법인세율은 한계투자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 2010년 값
- 미국의 평균법인세율 계산 방법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계산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양자 간 직접 비교는 어려움

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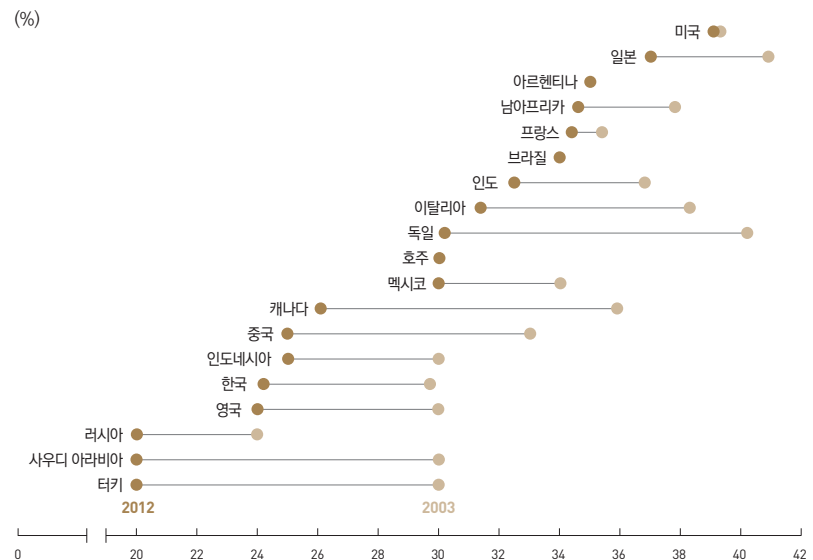


해외 재정 동향

●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른 G20 국가들보다 10%p 높음

- ▶ 2003년에는 일본, 독일, 미국 등이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본과 독일이 감세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2012년에는 미국만이 가장 높은 법인세율 적용 국가가 됨
- ▶ G20 이외 국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양하여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법인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55%에 이를 정도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게 유지함

그림 4. G20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2003년, 2012년)



※출처 : CBO(KPMG International)과 OECD 데이터 활용)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은 2003년과 201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동일함

● 평균법인세율도 미국이 다른 G20 국가에 비해 높은 편

- ▶ 평균법인세율은 기업소득세의 항목 대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투자유인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경제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 ▶ 외국 기업의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부담하는 평균법인세율은 29%로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10%p 낮았지만 미국기업의 G20 현지 법인이 해당국가에서 부담하는 평균세율보다 높았음
- ▶ 미국의 평균법인세율은 2004년 32%에서 2012년 29%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경제 및 경영환경 변화에서 기인
- ▶ 같은 기간 G20국가 중 8개국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로 미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 부담하는 평균세율 감소

● 미국의 실효법인세율의 경우 자산·부채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

- ▶ 실효법인세율 차이는 자산 상각 방법, 투자 자원 조달 방법 등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며 이에 따라 부채를 통한 투자에 대한 실효법인세율이 자기자본을 통한 투자에 대한 실효세율보다 낮음
- ▶ 미국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해 공제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G20 국가와 다르게 건물보다 기계장치에 대한 공제 폭이 큼
- ▶ 이러한 차이에 따라 미국의 실효법인세율은 기계장치 투자의 경우 2012년 G20 국가 중 열 번째로 높았으나, 건물 투자의 경우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당금 지급 및 자본이득을 제외한 이자 지급 비용은 공제되기 때문에 부채 조달에 대한 실효법인세율이 자기자본 조달에 대한 실효법인세율보다 낮음
- ▶ 미국과 타 국가와의 차이는 고(高)법인세율 적용구간에서 더 크게 발생

◆ 시사점

우리나라도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의 차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고용 창출, R&D 제고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비과세·감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세정 측면에서 조세 감면의 성과에 대한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해외 재정 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7년 예산성과금 심사에서 “재정절약 우수” 공동 기여자로 dBrain운영본부를 선정

- 기획재정부는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98년부터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중이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의 「대규모 재정사업 낙찰차액 통제강화」를 포함하는 '16년 재정절약 사례 45건을 선정, 총 5억 1200만원 예산성과금을 지급

※ 재정개선효과는 5709억 원(지출절약 4287억 원 수입증대 1422억 원)으로 집계

- 「대규모 재정사업 낙찰차액 통제강화」의 일환으로 dBrain의 총사업비 시스템을 개선한 노력이 인정되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와 함께, 공동 기여자에 선정됨

베트남 호치민아카데미연수단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 베트남 미래비전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사업 호치민아카데미연수단 일행은 한국의 선진화된 재정정보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4월 21일 한국재정정보원에 방문
-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개혁 경험 및 dBrain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 온라인 업무처리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dBrain시스템을 소개
- 또한 정보원의 설립 배경 및 주요 기능과 국제협력 전략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진행

e나라도움 슬로건UCC 공모 시상식 성공적 개최

-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7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이 주관한 'e나라도움 슬로건·UCC 공모'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
- 슬로건 대상작인 '국고보조로 희망을, 투명관리로 믿음을'은 e나라도움 도입 취지를 적절하게 표현하였고, 동영상 우수상도 국민 눈높이에서 e나라도움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다고 평가받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2017년 1월 보조금 집행 기능 위주로 1차 개통하여 서비스 중이며, 오는 7월 맞춤형정보 공개, 유사중복검증, 정산기능 등을 추가하여 전면 개통될 예정임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철저한 자체 보안 점검 실시

- 한국재정정보원은 PC보안성을 강화하고 내부 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자체적인 보안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사이버안전센터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점검의 시행을 강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IT기술 세미나 개최

- dBrain운영본부는 5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권용현 과장을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IT기술 세미나 개최
- AI, Cloud, Big Data 등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 및 고용구조 등의 변화를 소개하였으며, 지능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산업·사회 분야별 전략과제를 발표
-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인 고품질·고가치 데이터 보유 및 확대 방안과 선진국 공공분야의 지능정보기술 적용사례, dBrain 내 재정정보 활용을 위한 부처간 협력 등 다양한 의견 공유



한국재정정보원의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dBrain) 운영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재정 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재정정보 연구본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 통계를 분석하고
재정 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재정 교육 사업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dBrain 국제 협력

국제 금융 기구(WB, IDB, ADB 등)와
재정 정보화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재정 혁신 및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합니다.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정보 통신망을 보호하는
재정 경제 분야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로서
종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고 보조금 통합망 운영

국고 보조 사업 전 과정을 통합화·표준화·전자화하여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근절합니다.

월간

나라 재정

5월호

월간 나라재정 2017년 5월호
통권 제5호(발행번호)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이원식(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

편집위원

강영규(기획재정부 과장)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연훈수(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박소영(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김도일(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디자인제작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정 전문 연구기관

재정의 통합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재정 운영 지원

통합체계적 재정정책
통계 분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관리 지원

- 재정 통계 분석 기법 개발
- 재정 통계 분석 및 재정 정보 공개

- 각종 재정 사업 평가 및 관련 연구
- 재정 정책 전반 연구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